

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개요

1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

● 개요

경기의 변동,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,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

● 지원대상

지원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(퇴직자 포함)

● 지원내용

고용유지지원금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

● 지원기간

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,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

2 지정 업종 범위 및 지원기간

● 조선업

지원기간

조선업 (지원기간: '16.7.1.~'21.12.31, 7차례* 연장)

* ▲(1차) '17.7.1~'18.6.30 ▲(2차) '18.7.1~'18.12.31
 ▲(3차) '19.1.1~'19.6.30 ▲(4차) '19.7.1~'19.12.31
 ▲(5차) '20.1.1~'20.6.30 ▲(6차) '20.7.1~'20.12.31
 ▲(7차) '21.1.1~'21.12.31

-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「C311. 선박 및 보트 건조업」에 해당하거나
 *다만, 현대중공업(주)(계열사 포함), 삼성중공업(주), 대우조선해양(주)는 제외
-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기업(상기 제외 사업장 포함)으로부터 매출액의 1/2 이상이 발생함을 입증한 사업장

● 항공기취급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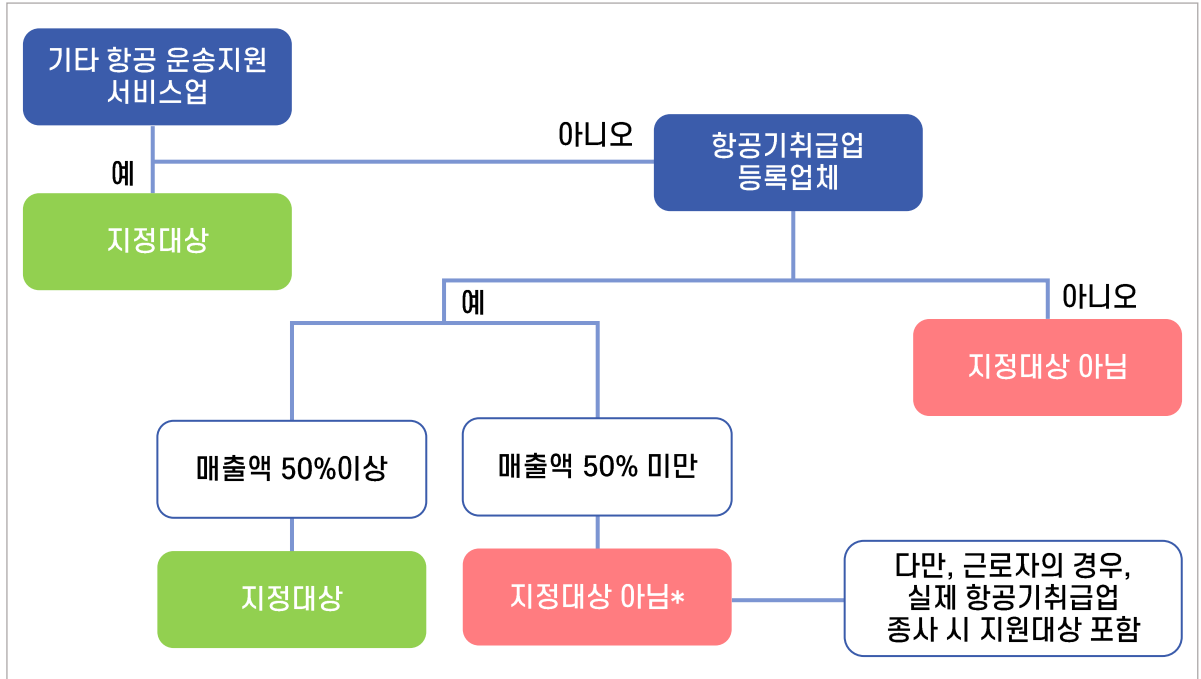
지원기간 '20.4.27~'22.3.31, 2차례* 연장

* ▲(1차) '20.9.16~'21.3.31 ▲(2차) '21.4.1~'22.3.31

-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에 해당하거나 또는 개별법 등에서 정한 방법 (면허, 등록, 소관부처 장관 확인 등)으로 확인된 업체

업종	분류 기준		
항공기 취급업	업종코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2939(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) 	
	개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항공사업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	
		지원대상 사업주	지원대상 근로자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 종매출액 50%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다만, 고용유지지원금 중무급휴직 신속프로그램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50% 미만인 업체에서 항공기취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소속업체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 → 업체 소속 근로자·퇴직자 전체가 지원대상 (종사업무 제한없음) ② 소속업체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이 50% 미만인 경우 → 항공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였던 근로자·퇴직자만 지원대상
<항공기취급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 참조>			
면세점	업종코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7130(면세점) 	
	개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관세법」 제174조,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	
전시·국제 회의업	업종코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5992(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) 	
	개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	
공항버스	개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, 매출액 50%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	

● 항공기취급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



*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매출액 50% 요건과 관계없이 항공기취급업에 종사할 경우 지원 가능

● 영화업 등

지원기간 '20.4.1.~'22.3.31.

업종	분류 기준
영화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·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·배급업,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
노선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버스(고속버스 포함), 시내버스(마을버스·농어촌버스 포함,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)
항공기 부품제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
유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·수리한 업체
외국인 전용 카지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
수련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

3 주요 지원내용

참고 1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주요내용

구분		일반		특별고용지원 업종
고용유지 지원금 (유급휴업· 휴직)	지원수준	우선지원대상기업 2/3 대규모기업 1/2~2/3		우선지원대상기업 90% 대규모기업 2/3~3/4
	지원한도	1일 6,6 만원		1일 7 만원 (대규모기업 6,6 만원)
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	지원한도	1일 6,6 만원		1일 6,6 만원
	지원요건	① 무급휴직 실시(30일)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 업 또는 유급휴직(3개월)		① 무급휴직 실시(30일)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(1개월)
직업훈련	사업주 훈련지원	지원 한도	납부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240%)	납부보험료의 130% (우선지원대상기업 300%)
		훈련비 지원 단가	우선지원대상기100% 1,000인 미만 60% 1,000인 이상 40%	우선지원대상기업 150% 1,000인 미만 100% 1,000인 이상 90%
	국민내일 배움카드	-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15~55%		-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0~20%
	채용 예정자 양성훈련	훈련수당 20만원		훈련수당 40만원
	훈련연장 급여요건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 항 제1호~제4호 요건 모두 충족	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
	생계비 대부한도	1명당 1천만원		1명당 3천만원
고용·산재보험료 및 장래인 의무고용 부담금		납부기한 연장 × 체납처분 집행유예 ×		납부기한 연장 ○ 체납처분 집행유예 ○
건강보험료(보건복지부)		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×		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○
고용보험 자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		부과(1인당 3만원)		면제
국민취업지원제도 II		중위소득 100% 이하 참여		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
인프라(특화전달체계)		-		조선업 희망센터(울산. 거제)
생활안정자금(용자)		임금체불생계비 대부한도 1,000만원		임금체불생계비 대부한도 2,000만원

참고 2

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주요 내용

구분		일반		특별고용지원 업종
고용유지 지원금 (유급휴업·휴직)	지원수준	우선지원대상기업 2/3 대규모기업 1/2~2/3		우선지원대상기업 90% 대규모기업 2/3~3/4
	지원한도	1일 6,6 만원		1일 7 만원 (대규모기업 6,6 만원)
고용유지 지원금 (무급휴직)	지원요건	① 무급휴직 실시(30일)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(3개월)		① 무급휴직 실시(30일)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(1개월)
	지원한도	1일 6.6만원과 평균임금의 50%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		무급휴직 지원기간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하고,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
직업훈련	사업주 훈련지원	지원 한도	납부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240%)	납부보험료의 130% (우선지원대상기업 300%)
		훈련비 지원 단가	우선지원대상기100% 1,000인 미만 60% 1,000인 이상 40%	우선지원대상기업 150% 1,000인 미만 100% 1,000인 이상 90%
	국민내일배움카드	-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15~55%		-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0~20%
	훈련연장급여요건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~제4호 요건 모두 충족	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
	생계비 대부한도	1명당 2천만원		1명당 월 3백만원, 총 3천만원
고용·산재보험료		납부기한 연장 × 체납처분 집행유예 ×		납부기한 연장 ○ 체납처분 집행유예 ○
건강보험료(복지부)		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×		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○
국민연금(복지부)		납부기한 연장 × 체납처분 유예 ×		납부기한 연장 ○ 체납처분 유예 ○
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		중위소득 100% 이하 참여		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		부과 (1명당 3만원)		면제
국민취업지원제도 II		중위소득 100% 이하 참여		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

구분		일반	특별고용지원 업종
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용자	소득요건	(임금감소·소액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의 70% (‘21년 월 186만원) (이외 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 (‘21년 월 266만원)	(임금감소·소액생계비) 4인가구 중 위소득 2/3 이하의 70% (‘21년 월 228만원) (이외 생계비) 4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 (‘21년 월 326만원)
	상환기간	최대 5년(거치 1년/상환 3~4년)	최대 8년(거치 1~3년/상환 3~5년)
	한도액	(임금채불생계비) 1천만원 (자녀학자금) (1자녀당) 연 5백만 원	(임금채불생계비) 2천만원 (자녀학자금) (1자녀당) 연 7백만원 (2종류 이상 용자 시) 3천만원
	대상자	(자녀학자금) 고등학생 자녀	(자녀학자금)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
고용촉진장려금		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	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
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	지원대상	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	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 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

● 지원문의

- 부산청 : 051-860-2156
- 부산동부지청 : 051-559-6638
- 부산북부지청 : 051-309-1575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: www.moel.go.kr